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4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정희용·윤영석·김성원

김예지 • 박정하 • 서천호

박덕흠 • 정동만 • 박충권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 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 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 밖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5세"를 "9세 이상부터 15세"로, "35시간을"을 "35시간을, 1일에 7시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0시간을, 1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40시간을"을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 에 따른 신탁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받은 자
-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 |
| | 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 |
| | 원)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 |
| | 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 |
| | 여 심리적 6 육체적 건강이 악 |
| | 화되거나 그 밖에 질병 등이 |
| | 발생한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
| |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
| | <u>한다.</u>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 |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 |
| | 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 |
| | 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
| | <u>수 있다.</u> |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 |
| 문화예술용역 제공) <u><신</u> |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 |
| <u>설></u> | 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9세 미 |
| | 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
| |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 |
| | 에 30시간을, 1일에 6시간을 초 |
| | 과하지 못한다. |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 <u>②</u> |

시 <u>15세</u>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u>35시간을</u> 초과 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 저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 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 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 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 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

| <u>9세 이상부터 15세</u> |
|---------------------|
| |
| <u>35</u> |
| 시간을, 1일에 7시간을 |
| <u>.</u>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u>4</u> |
| |
| <u>제1항 및 제2항을</u> |
| |
| |
| |
| |
| <u>.</u> |
| ⑤ 그 밖에 15세 미만의 청소 |
|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 |
| 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세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 |
|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
| |
| |
| |
|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
| |
| · |

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0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 | | |
|------|------|------|
| | | |
| | | |
| | | |

- ② ③ (현행과 같음)
- ④ 그 밖에 15세 이상의 청소 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 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용역보수의 신탁)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은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관리 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 른 신탁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은

| | <u>자</u> |
|---------------------|------------------------|
| <u> <신 설></u> |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 |
| |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 |
| | 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 |
| | 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
| | 시간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 |
| <u>3.</u> (생 략) | <u>5.</u>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